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약속 이행 촉구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청 원 자 : 서울 서초구 우면동 동양고속아파트 104동 303호, 안
중숙 외 1,409명
- 소개의원 : 김종욱 의원(교육위원회)
- 접수일자 : 2013. 6. 18(50번)
- 회부일자 : 2013. 6. 19

2. 청원요지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서울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는 중학교 용지 1개소를 포함하여 계획이 승인(2010.4.27)되었으나, 지역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지구계획 변경안을 확정(2011.6) 하여 중학교용지를 폐지하여 지구 내 중학생들의 학습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당초 계획과 같이 중학교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 인근의 폐교 예정인 언남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요구함.

3.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서울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7호(2009.12.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중학교 용지 1개소(12,000m²)를 포함한 형태로서 2010년 4월 27일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이 승인된 상황임. 지구 계획 승인과정 및 입주 설명회 등에서 중학교 신설계획은 이미 공지된 바 있고, 또한 지구계획은 중학교부지를 포함하여 승인이 이뤄진 것임. 하지만 이후 지역주민과 입주예정인들에게 어떠한 협의나 공지도 없이 중학교 부지의 주택지구 변경이 이뤄지게 되었는데, 이는 행정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서울시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부정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임
- 내곡동 주민들의 경우, ‘중학교용지폐지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244명의 서명을 통해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중학교용지폐지반대 주민탄원서’를 2012년 10월 31일 강남교육지원청에 제출하였고, 사전 입주 예정자들은 중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재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지구 내 중학교 신설 약속에 관한 이행 촉구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과 SH공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처리과정을 밝혀야 할 것임.

- 주민들에게 약속한 당초 계획과 같이 중학교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의 물리적 상황에서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면, 언남초등학교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 대안에 대해서도 현실 가능한 방안임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함께 건의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 청원법(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5. 검토의견

- 동 청원은 서울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중학교 신설과 더불어 동 지구 내에 중학교의 신설이 불가능할 경우 2014년 3월 이전에 예정인 현 언남초등학교 부지에 중학교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임.

□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개요

-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대 811,615㎡(245,943평)를 이용한 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공동주택 4,486세대, 도시형주택 100세대, 단독주택 21세대 등 총 4,607세대로 구성되며 2013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2015년 9월에 입주가 완료될 계획임.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 공급내용

구분	세대수	추정 중학생수	입주시기
공동주택	4,486	554	‘13.10~’15.09
도시형주택	100	6	미정
단독주택	21	3	미정
계	4,607	563	

※ 추정 중학생수는 평형별·분양별(영구임대, 국민임대, 보금자리분양, 장기전세 등)로 구분하여 추정

□ 중학교 폐지 결정 추진 경과

- 동 청원의 주 내용인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최초 2009년 12월 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당시에는 유치원용지 2곳, 초등학교 용지 1곳, 중학교 용지 1곳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0년 4월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 시에도 중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음.
- 2010년 5월 지구 내 “중학교 신설”에서 인근의 “언남중학교 증축 및 교실 재배치”로 학교신설에 대한 변경계획이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2011년 8월 내곡보금자리지구 계획변경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중학교 설립 검토 시까지 중학교용지 폐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되었음. 그 후 2012년 9월 내곡보금자리지구 지정 변경 등 협의를 통하여 중학교용지의 폐지가 결정됨.

주요추진 경과

일시	내용
2009.12	서울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7호) - 유치원용지 2곳, 초등학교 용지 1곳, 중학교 용지 1곳 지정
2010. 1	서울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승인 협의 및 교육환경평가 신청(SH⇒강남)
2010. 4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중학교 용지 확보)
2010. 5	내곡보금자리지구내 중학교 설립 계획 변경신청(강남⇒국토부,SH,서울시) - 학교신설 → 언남중 증축 및 교실 재배치
2010. 7	내곡동 인근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1종 전용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 통보(서초구⇒강남)
2011. 6	내곡보금자리지구 계획 변경(중학교용지→주택용지)관련 의견 조회(국토부⇒강남)
2011. 8	내곡보금자리 지구 계획 변경 회신(강남⇒국토부) - 중학교 용지는 중학교 설립 검토 시까지 유보
2012. 2	내곡동 기존마을 개발계획 보류 결정(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2. 5	내곡보금자리 지구내 중학교 설립 관련 의견(강남⇒국토부) -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전체 세대의 45%가 장기적 학생수 감소 예상 - 지구내 중학교 신설 보다 언남중 증축 수용 의견 회신
2012. 9	내곡보금자리 지구 지정 변경 등 협의(국토부⇒강남) - 중학교 용지 폐지, 지구면적과 세대수 4,247호→4,693호 변경
2012. 12	내곡보금자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 중학교 용지 폐지, 지구면적과 세대수 4,247호→4,607호 변경
2013. 4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 - 내곡보금자리 중학생 수용을 위한 언남중 증축(24실), 급식실, 체육관 증축(98억원)
2013. 6	서울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 민원의 요지

- 이와 같은 기존의 내곡보금자리지구 내 중학교 신설의 백지화와 인근의 언남중학교의 증축을 통한 지구 내 학생수용 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요지는 첫째, 사전예약 공고시 주거지 선택의 주요결정사유였던 지구 내 중학교의 신설이 중도에

백지화됨으로써 이로 인한 박탈감과 더불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 둘째, 언남중학교까지의 통학거리의 문제, 셋째, 언남중학교의 과밀학급·과대학교 현상에 따른 교육 환경의 열악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중학교 신설의 중도 백지화와 관련하여, 당초 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2009. 12)과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2010. 4) 시에는 중학교가 설립될 계획으로 2010년 5월 7일부터 시작된 내곡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공고 시에도 중학교의 신설이 공시되었으며, 입주희망자들의 주거지 선택시 이 부분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및 SH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면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둘째, 언남중학교까지의 통학거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내곡동에 설립예정이었던 신설중학교와 비교할 때 언남중학교의 위치가 통학거리상 불편함은 분명해 보이며, 특히 위치에 따라서는 40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의 문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만일 현재의 계획과 같이 언남중학교의 증축을 통한 학생수용계획이 불가피하다면 세곡중학교 등 인근의 또 다른 중학교를 이용한 분산배치를 통하여 원거리통학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언남중학교 증축 계획

- 셋째, 언남중학교의 과밀학급·과대학교 현상에 따른 교육환경의 열악화와 관련하여, 현재 언남중학교의 학급규모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22학급 605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일반교실 22실, 특별교실 21실, 관리실 8실, 기타 11실 등 62실을 보유하고 있음.

언남중학교 학급규모 및 시설현황

(‘13.4.1기준, 단위: 명, 실)

학생수	학급수	급당 인원	보유교실 현황(실)					면적(m ²)	
			일반	특별	관리	기타	계	부지	연면적
605	22(1)	28.8	22	21	8	11	62	13,886	7,813

- 한편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공동주택 입주계획에 따른 추정 중학생수를 살펴보면, 총 7단지에 약 554명의 중학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공동주택 입주계획

(‘13.3.15기준, 단위:세대, 명)

단 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계
세대수	1,264	1,077	482	256	547	550	310	4,486
입주시기	‘14.08.	‘15.06.	‘14.06.	‘14.12.	‘14.05.	‘15.03.	‘13.10.	
추정 중학생수	196	96	66	38	80	53	25	554

- 또한 언남중학교의 증축계획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을 살펴보면 입주시작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게 되는 2014년도에는 33학급 1,057명, 입주가 완료되는 2015년도에는 38학급 1,218명으로 2020년도에는 39학급 1,26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언남중학교 학생수용계획(증축 수용)

(단위:명)

학교명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7년도			2020년도		
	학생	학급	급당 인원	학생	학급	급당 인원	학생	학급	급당 인원	학생	학급	급당 인원	학생	학급	급당 인원
언남중	605	22(1)	28.8	1,057	33(1)	33.0	1,218	38(1)	32.9	1,180	38(1)	31.9	1,260	39(1)	33.2

- 이와 같이 언남중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2014년도 33.0명, 2015년 32.9명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본 계획”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35명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겠음. 다만, 교당 학생수가 1,200명을 초과하는 과대학교가 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백지화하고 인근의 언남중학교를 증축하여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소요시 통학구역 및 학교군의 합리적인 조정, 기존 학교 증축 이전·통폐합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를 신설할 경우 언남중학교의 학구 축소로 인하여 동 중학교의 학생수가 5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가칭)내곡중학교 신설 시 언남중학교 예상 학생수 및 학급수

학군별	학교명	연도별	학생수 및 학급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	계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급당
4학군	언남중	2012	199	7	28.4	222	7	31.7	266	9	29.6	1	687	24	29.9
		2013	205	7	29.3	208	7	29.7	228	7	32.6	1	641	22	30.5
		2014	174	6	29.0	204	7	29.1	205	7	29.3	1	583	21	29.2
		2015	179	6	29.8	173	6	28.8	201	7	28.7	1	553	20	29.1
		2016	143	5	28.6	179	6	29.8	172	6	28.6	1	494	18	29.1
		2017	187	6	31.2	143	5	28.6	176	6	29.3	1	506	18	29.8
		2018	155	5	31.0	186	6	31.0	141	5	28.2	1	482	17	30.1
		2019	160	5	32.0	155	5	31.0	184	6	30.6	1	499	17	31.2
		2020	172	6	28.7	160	5	32.0	153	5	30.6	1	485	17	30.3
	내곡중	2012													
		2013													
		2014	177	5	35.4	138	4	34.5	138	4	34.5		453	13	34.8
		2015	190	6	31.7	214	6	35.7	174	5	34.8		578	17	34.0
		2016	195	6	32.5	189	6	31.5	210	6	35.0		594	18	33.0
		2017	170	5	34.0	194	6	32.3	186	6	31.0		550	17	32.4
		2018	201	6	33.5	200	6	33.3	222	6	37.0		623	18	34.6
		2019	227	7	32.4	231	7	33.0	228	6	38.0		686	20	34.3
		2020	253	7	36.1	257	7	36.7	258	8	32.3		768	22	34.9

- 따라서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학교를 신설할 경우 언남중학교의 과소화의 문제가, 동 지구 내 중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언남중학교를 증축할 경우에는 언남중학교의 과대화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이미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재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언남초등학교 이적지에 대한 중학교 신설

- 서초구 염곡동 72에 위치한 언남초등학교는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통학구역이 넓어 통학이 불편한 소규모 학교로 경영상의 문제 및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2014년 2월말로 폐교하고 같은 해 3월 서초구 내곡동 122로 신설·이전할 계획임.

언남초등학교 이적지 현황

현소재지	이전지	설립일	이전 시기	학급수		부지 면적 (㎡)	건물		건축 연도	비고
				현재	이전 후		동수	면적 (㎡)		
서초구 염곡동 72	서초구 내곡동 122	'48.06	'14.03	12(2)	44	10,175	본관	4,820	1980	서울내곡보급자리주택
							후관		1966	

- 현 언남초등학교 이적지에 중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법적인 제한은 없다고 하겠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예산 및 부지여건, 학생수용계획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8. (생략)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 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청원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수사·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